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3. 7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3. 7
- 다. 상 정 일 자 : '97. 3. 18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자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나. 제안사유

-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자구수정

"조례규칙등은 화순군"을 →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로
(안 제7조)

"조례규칙등"은 → "자치법규"로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 병 향)

-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24
----------	---------

제출년월일 : 1997. 3. 7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구수정

"조례규칙등은 화순군"을 →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로 개정
(안 제7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를 삭제 (안 제7조)

"조례·규칙등"을 → "자치법규"로 개정 (안 제8조)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조례·규칙등은 화순군 공보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로 하고 단서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8조중 "조례·규칙등"을 "자치법규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 (공포방법) <u>조례·규칙등은</u> <u>화순군 공보의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u> 다만, <u>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u>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한다.</p>	<p>제7조 (공포방법) <u>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공보에의 게재로서 한다.</u> 다만, 지방의회 - .</p>
<p>제8조 (공포일) <u>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u></p>	<p>제8조 (공포일) <u>자치법규등</u> - - - - - - - - - - <u>자치법규</u> - - - - - - - - - - - - - - - .</p>